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8월 30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의 광역행정 처리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나
-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의 심화,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광역대단위 공공시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 도에서는 시·군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기 능 : 시·군상호간 분쟁사항 심의
- 구 성 : 위원장인 부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

회 의 :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의견청취 :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가능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오늘날 도시생활권의 확산과 더불어 도시화의 광역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광역화의 계속적인 진전과 함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물적 상호작용관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
로서 광역권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생활권이나 행정적으로는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바, 그예로
상수도, 도로, 철도, 전기, 가스설비, 유통시설 폐기물처리장 등의 광역
적 시설물등의 통합관리 유지가 곤란한 단계로서 시·군단체간의 다발적인
분쟁발생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의 촉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당연
직으로하고, 위원은 공무원 6인과 분쟁소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7인으로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지역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하는등 운영에 관련한 조문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광역행정의 추진에
절실한 조례안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